2022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

의 안 번 호 3155

제출년월일: 2022년 3월 10일 제 출 자: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 11조 제 2항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(안)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코로나 19 피해기업 자금공급을 위해 시중은행협력자금 대출잔액이 지속 증가하였고, '22년 4무 안심금융 1조원 공급에 따른 무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차보전금 지출액 27.500백만원을 추가 편성함.
- 나. 기금 지출계획 중 이차보전금 136,276백만원 반영에 따라, 예치금이 42,587백만원으로 변경되어 정책사업(재무활동) 지출계획은 당초 대비 37.8% 변경되었음.

- 이차보전금 : 108,776백만원 → 136,276백만원 (증 27,500백만원) - 예 치 금 : 70,087백만원 → 42,587백만원 (감 27,500백만원)

○ 2022년 기금운용계획 지출 변경내역

(단위: 백만원)

정책/세부사업	당초(A)	변경(B)	증감 (B-A) (증감률)
합 계	383,743	383,743	-
중소기업 금융지원	310,901	338,401	27,500(8.8%)
중소기업직접융자	200,000	200,000	-
시중은행협력자금지원 이차보전금	108,776	136,276	27,500
자금통합관리시스템유지보수	216	216	-
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지원	607	607	-
기금업무대행수수료	1,302	1,302	-
재무활동	72,837	45,337	△27,500(△37.8%)
통화자연화기금(통화점) 예수금 원금 상환	2,750	2,750	-
예치금	70,087	42,587	△27,500
행정운영경비	5	5	-
기금관리비	5	5	-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(생략)
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- 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-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 -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소상공인정책팀 김두만 (☎2133-5190)